

# 통합 조세법률(HPP)

##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 < 차 례 >

(1쪽) 제1장 서론 : 제정원칙, 목적 등

(2쪽) 제2장 국세기본법(개정) : ①납세자번호를 ID번호로 통합, ②조세분야 국제협력, ③행정벌과금 제재 완화·구체화, ④조세범죄 수사·재판

(8쪽) 제3장 소득세법(개정) : ①개인·법인소득세율 조정, ②복리후생비 소득·비용 인정, ③20년 초과 건물·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④세무 국제공조

(13쪽) 제4장 부가가치세법(개정) : ①부가가치세율 인상, ②③면세대상 축소 및 전략적 재화 지정(비과세 확대) → 비과세대상 일부 축소

(17쪽) 제5장 조세사면(신설) : 2016~2020 취득한 미신고 자산에 대해 12~18%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세무조사 및 기소 등을 면제

(25쪽) 제6장 탄소세(신설) : 이산화탄소 등가물(CO<sub>2</sub>e)의 단위 킬로그램당 탄소 시장 가격(또는 30 IDR)을 부과함

(26쪽) 제7장 소비세(개정) :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28쪽) 제8장 경과규정 : 신법에 의한 과거 조세사면법안 적용의 일시정지

(28쪽) 제9장 클로징 : 소득세법 2022 회계연도 시행, 부가세법 및 탄소세 2022.4.1. 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장 서론** : 제정원칙, 목적 등

**제2장 국세기본법** : ①납세자번호를 ID번호로 통합, ②조세분야 국제협력, ③행정벌과금 제재 완화·구체화, ④조세범죄 수사·재판

① 납세자번호를 ID번호로 통합

구분	규정	기존	신규
납세자번호를 ID번호로 통합	국제 기본법 제2조	※ (의미)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ID번호로 납세자번호를 통합하기로 함	
			(1a) [신설] 제1항에서 언급된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개인납세자를 위해 사용되는 납세자번호(NPWP)는 ID번호(NIK)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10) [신설] 납세자번호(NPWP)로서 ID번호(NIK)를 사용함에 있어, 과세데이터로 통합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에게 인구통계 및 사용자 피드백데이터를 제공한다.

② 조세분야 국제협력

구분	규정	기존	신규
<p>세금징수에 대한 국제공조</p>	<p>국제 기본법 제20A조</p>		<p>※ (의미) 다자간 조세협약 등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상 근거규정의 부재로 인해 상대국의 조세징수를 지원할 수 없었음. 금번 규정 신설을 통해 타국의 지원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니도 상대국에 대해 조세징수를 요청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무부 장관은 세금징수 지원의 실행을 위해 파트너 국가 등과 협조할 권한이 있다.</li> <li>(2) 제1항에서 언급된 세금 징수 지원의 실행은 국제청장에 의해 실행되는 바, 이는 세금징수 지원의 제공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세금징수 지원 요구를 포함한다.</li> <li>(3) 제2항에서 언급된 세금징수 지원의 제공과 세금징수 지원의 요구는 상호 국제협정에 의한다.</li> <li>(4) 제1항에 언급된 파트너 국가 등은 국제 협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속되는 국가 등이다.</li> <li>(5) 제3항에 언급된 국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조세 징수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는 양자 및 다자 협정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중과세방지협정</li> <li>b. 조세 분야의 공동 행정 지원에 관한 협약; 또는</li> <li>c. 기타 양자 또는 다자 협정.</li> </ol> </li> <li>(6) 제2항의 조세징수 지원은 파트너 국가 등으로부터 세금 청구를 받은 후 이행할 수 있습니다.</li> <li>(7) 제6항에 언급된 세금 청구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파트너 국가 등의 법적 도구이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징수 지원을 위한 세금 청구 금액의 가액이 요구된다</li> <li>b. 세금 청구에 대한 납세자의 ID</li> </ol> </li> <li>(8) 제7항의 세금청구는 구속력있는 서신에 따르는 세금징수의 근거이다.</li> <li>(9) 파트너 국가 등의 세금 청구에 대한 세금 징수 결과는 파트너 국가 등으로 보내기 전에 다른 정부 계정에 예치된다</li> </ol>

구분	규정	기존	신규
상호합의 절차 신설	국세 기본법 제27C조		<p>※ (의미) 상호합의 절차를 법규화시킴은 물론, 국내 재판과 중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호합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실무 적용사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청장은 세무국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li> <li>(2)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안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국내 납세자</li> <li>b. 국세청장;</li> <li>c.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파트너 국가 등의 권한있는 당국; 외</li> </ol> </li> <li>(3) 제2항의 a, b, c에 따른 상호합의 이행요청서는 내국납세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제25조에 언급된 이의 제기</li> <li>b. 제27조에 언급된 항소 또는</li> <li>c.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감면 또는 취소</li> </ol> </li> <li>(4) 제3항 b에 언급된 상호합의 이행이 항소 결정 또는 검토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상호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항소심 또는 상고결정에서 결정된 분쟁자료가 상호합의 절차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경우 협상을 계속한다. 또는</li> <li>b. 결정된 이의 제기 자료가 단체협약 절차에 의해 제안된 자료인 경우 항소 결정 또는 상고 결정을 협상의 입장으로 사용하거나 협상을 중단합니다.</li> </ol> </li> <li>(5) 국세청장은 상호 동의에 대한 결정서를 발행하여 제1항에 언급된 상호합의 이행 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li> <li>(6) 제5항에 따른 상호합의에 관한 결정서에는 제11조 제1a항에 따른 환급기준 또는 제18조에 따른 징수기준이 기재되어 있다.</li> </ol>

③ 행정벌과금 제제 완화·구체화

구분	규정	기존	신규
행정벌과금 제제 완화	국세 기본법 제13조	<p>(3) 상기 제1항 b, c, d에서 언급한 추정결정서 상의 과세총액에 다음의 행정벌과금이 부과된다.</p> <p>a. 1년의 과세연도 중에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소득세의 50%</p> <p>b. 부족 징수, 공제 또는 납부한 소득세의 100%</p> <p>c.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100%</p>	<p>(3) 상기 제1항 b, c, d에서 언급한 추정결정서 상의 과세총액에 다음의 행정벌과금이 부과된다.</p> <p>a. 1년의 과세연도 중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소득세의 이자</p> <p>b. 부족 공제 또는 납부한 소득세의 이자</p> <p>c.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75%</p> <p>d. 원천징수 혹은 징수되었으나 미납 혹은 과소납된 소득세의 75%</p>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벌과금 감소	국세 기본법 제25조	<p>(9)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분승소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세액에서 이의신청 전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가 행정벌과금으로 부과된다.</p> <p>(10) 납세자가 항소결정서를 제출할 경우, 상기 제9항에 언급된 행정벌과금 50%는 부과되지 않는다.</p>	<p>(9)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분승소할 경우, 납세자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세액에서 이의신청 전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b>30%</b>가 행정벌과금으로 부과된다.</p> <p>(10) 납세자가 항소결정서를 제출할 경우, 상기 제9항에 언급된 행정벌과금 <b>30%</b>는 부과되지 않는다.</p>
항소 패소 시 행정벌과금 감소	국세 기본법 제27조	<p>(4a) 납세자가 항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발행된 이의제기 결정서의 근거가 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5d) 항소가 기각되거나 부분승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항소결정서 세액에서 이의신청 전 납부세액 차감의 100%가 행정벌과금으로 부과된다.</p>	<p>(4a) 납세자가 항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b>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b>, 발행된 이의제기 결정서의 근거가 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5d) 항소가 기각되거나 부분승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항소결정서 세액에서 이의신청 전 납부세액 차감의 <b>60%</b>가 행정벌과금으로 부과된다.</p>

구분	규정	기존	신규
상고 폐소 시 행정벌과금 신설			<p>(5e) [신설] 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사법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세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행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는다.</p> <p>(5f) [신설] 대법원 판결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총 세액에서 이의신청 전 납부세액 차감의 60%가 행정벌과금으로 부과된다. .</p> <p>(5g) [신설] 제5f항에 언급된 행정 제재에 대한 세금 징수 서한은 국세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된다.</p>

④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구분	규정	기존	신규
조세범죄 수사 중단사유의 구체화	국세 기본법 제44B조	<p>(1) 검찰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조세범죄 수사를 요청서 발행일 이후 최대 6개월간 중단할 수 있음.</p> <p>(2) 위 제1항의 조세범죄 수사 중단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세금 또는 환급되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벌금 형식의 행정 제재와 함께 완납한 후에만 가능함.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세금 또는 환급되지 않았어야 할 세금의 <u>3배</u>로 정함.</p> <p>(3) 위 제1항의 조세범죄 수사 중단 요청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함.</p>	<p>(1) 검찰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조세범죄 수사를 요청서 발행일 이후 최대 6개월간 중단할 수 있음.</p> <p>(2) [개정] 위 제1항의 조세범죄 수사 중단은 납세자 또는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한 후에 한다.</p> <p>a. 제38조(신고불이행)에 언급된 국가 세수 손실과 국가 세수 손실 금액의 <u>1배</u>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p> <p>b. 제39조(고의적 신고불이행)에 언급된 국가 세수 손실과 국가 세수 손실의 <u>3배</u>에 해당하는 행정 벌과금; 또는</p> <p>c. 제39A조(위조 세무증빙)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세액에 가산세액의 <u>4배</u>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을 가한다.</p> <p>(2a) [신설] 형사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피고는 다음을 지불할 수 있다.</p> <p>a. 상기 제2항 a, b의 손실금액과 행정벌과금; 또는</p> <p>b. 상기 제2항 c의 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과 행정벌과금</p> <p>(2b) [신설] 제2a항에 언급된 화해는 징역형을 수반하지 않고 기소에 대한 대가가 된다.</p> <p>(2c) [신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지급한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피고인 벌금의 대가로 산정할 수 있다.</p> <p>(3) 위 제1항의 조세범죄 수사 중단 요청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del>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함.</del> (삭제)</p>

구분	규정	기존	신규
조세범에 대한 벌금, 몰수, 징역 등 규정	국세 기본법 제44C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9조 및 제39A조에 언급된 벌금은 징역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li> <li>(2) 피고인이 최종 법원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경매한다. 피고는 규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형사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li> <li>(3) 자산에 대한 조사 및 몰수가 시행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형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li> </ul>
조세범죄 피고인의 불출석 등	국세 기본법 제44D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조세범죄 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다.</li> <li>(2) 판결 전에 제1항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을 조사받아야 하며, 종전 공판에서 낭독한 모든 증인진술서 및 문서 등은 재판에서 언급된 것으로 간주한다.</li> </ul>

**제3장 소득세** : ①개인·법인소득세율 조정, ②복리후생비 소득·비용 인정, ③20년 초과 건물·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④세무 국제공조

① 개인·법인소득세율 조정

구분	규정	기존	신규
개인소득세율 최고구간(35%) 신설	소득세 법	※ (의미) 최저 소득구간의 상한값을 늘리고, 최고 소득구간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율을 설정하였으며, 2020.4월 시행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2022년부터 20% 인하하려했던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a. 내국 개인 (과세표준, 세율, 단위: IDR) 50,000,000 이하 5%, 50,000,000 초과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30%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a. 내국 개인 (과세표준, 세율, 단위: IDR) <u>60,000,000 이하</u> 5%, <u>60,000,000 초과</u>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30%, <u>5,000,000,000 초과 35%</u>
법인소득세율은 20%로 인하하지 않고, 22%로 유지	제17조 제1항 a호	b. - 2020 과세연도와 2021 과세연도 : 22% - 2022 과세연도부터 : 20% *  * (대통령 긴급명령)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0	b. <u>내국법인에 대한 세율은 2022년부터 22%로 시행</u>

② 복리후생비 소득·비용 인정

구분	규정	기준	신규
		<p>※ (의미) 세법상 인정하지 않던 복리후생비를 인정함 ⇒ 그간 복리후생비로 종업원 개인적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인니 과세당국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통해 과세대상(개인)으로 포함하고,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삭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회사)</p>	
복리후생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a목	(1) 과세대상소득 a. 근로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로, 급료·임금·보조금·보상금·커미션·보너스·연금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	(1) 과세대상소득 a. 근로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로, 급료·임금·보조금·보상금·커미션·보너스·연금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b>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며</b> ,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d목	(3) 비과세대상 d. 노동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현물과 부가혜택으로 제공받은 대가 및 보상으로서, 대가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 또는 납세의무자여야 함. 납세자가 아닌자나 소득세법 제15조가 정하는 인정이윤(deemed profit) 과세를 받는 납세자로부터 받는 것은 과세대상임.	(3) 비과세대상 d. 노동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현물과 부가혜택으로 제공받은 대가 및 보상으로서, 다음을 포함 1.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음식, 식료품, 재료, 음료 등 2. 특정지역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3. 복리후생은 근로장소에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함 4. 복리후생은 예산관련 지정기관에서 지원받는 것 5. 유형에 따른 복리후생 그리고 특정한 제한 내의 것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n목	없음	(1)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은 총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함. 다음 사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예시임. <b>n. (신설) 복리후생으로 주어지는 교체비용 또는 복지</b>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e목	(1) 국내납세자나 고정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의 크기를 확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은 손금(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 종업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 (예외: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된 식음료, 법령상 규정된 작업장과 연관된 복리후생)	(1) 국내납세자나 고정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의 크기를 확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은 손금(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 삭제

③ 20년 초과 건물·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구분	규정	기준	신규
<감가상각>	※ (의미) 세법상 감가상각 규정 한도가 20년이었는바, 20년이 초과하는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새로 규정하였음		
내용연수 20년초과 건물 감가상각	소득세법 제11조		(6a) [신설] <u>영구빌딩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제6항의 내용연수에 의하거나, 납세자 기장에 근거한 실제 내용연수에 의하여 정액법으로 시행한다</u>
내용연수 20년 초과 무형자산 감가상각	소득세법 제11A조		(2a) [신설] <u>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제2항의 제4그룹에 언급된 내용연수에 맞춰 시행하거나, 납세자의 기장에 근거한 실제 내용연수에 의하여 시행한다.</u>

④ 세무 국제공조

구분	규정	기준	신규
국제공조 구체화	※ (의미) 국제거래가 확산하고, BEPS 등 국제공조가 늘어남에 따라 실무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공조 규정(예: 징수공조) 등을 도입		
	소득세법 제32A조	정부는 타국 정부와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정을 맺을 권한을 갖는다 (17 tahun 2000)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타국 등과 양자 혹은 다자간 조세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a.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 b.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c. 조세정보교환 d. 조세징수공조 e. 기타 조세협약

⑤ 기타사항

구분	규정	기준	신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이전을 과세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d목-4	(1) 과세대상소득 d. 자산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소득으로 다음의 것 4.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사업정관계, 소유관계 또는 지배관계가 없이 자산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증여, 기부, 원조에 따른 이익으로 다음을 제외한다 : 일촌 이내의 가족간의 이전, 종교법인이나 교육단체, 사회단체 또는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이전	(1) 과세대상소득 d. 자산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소득으로 다음의 것 4.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사업정관계, 소유관계 또는 지배관계가 없이 자산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증여, 기부, 원조에 따른 이익으로 다음을 <b>제외</b> 한다 : 일촌 이내의 가족간의 이전, 종교법인이나 교육단체, 사회단체 또는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이전
조합의 이익분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g목	(1) 과세대상소득 g. 형태와 명칭을 불문한 배당으로 다음을 포함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조합의 이익분배금	(1) 과세대상소득 g. 형태와 명칭을 불문한 배당으로 다음을 <b>포함</b> 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del>조합의 이익분배금</del>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을 반영	소득세법 제4조 제1a항 제1d항	(1a) 위 제(1)항 규정의 예외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납세 주체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을 부과함: a. 특수한 전문성을 지님; b. 국내 거주자 납세 주체가 된 이후 네 번의 과세 연도 동안 유효함.  (1d) 위 제(1a)항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절차와 특수한 전문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함.	(1a) 위 제(1)항 규정의 예외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거주 납세 주체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을 부과함: a. <b>법령(편집자 주: No.18/ PMK.03/2021)에 따른</b> 특수한 전문성을 지님; b. 국내 거주자 납세 주체가 된 이후 네 번의 과세 연도 동안 유효함.  (1d) 위 제(1a)항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절차와 특수한 전문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함.
과세가능소득 일부 확대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a목 e목	(2) 하기 소득은 과세될 수 있다 a. 보증금 및 기타 저축에 대한 이자,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 그리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e. 특정 기타소득	(2) 하기 소득은 과세될 수 있다 a. 보증금 및 기타 저축에 대한 이자,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 <b>화폐시장에서 단기채에 대한 이자나 할인금액</b> , 그리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e. <b>중소기업 납세자에 의해 수령되는 사업소득을 포함한</b> 특정 기타소득

구분	규정	기존	신규
재무부령으로 규정된 비과세소득을 법률로 재규정	소득세법 제7조	<p>(1) 비과세소득의 크기는 최소 아래와 같다 (*편집자 주: 기존법률은 UU36/2008이나, 재무부령 Nomor101/PMK.010/2016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바 있음)</p> <p>a. 본인공제 54,000,000 루피아</p> <p>b. 배우자공제 4,500,000 루피아</p> <p>c. 제8조 제1항의 남편소득과 합산하는 부인의 경우, 부인 본인 공제 54,000,000 루피아</p> <p>d.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4,500,000 루피아, 최대 3명</p> <p>(2a) 제4조 제2항 제e목의 중소기업 개인납세자는 연간 500,000,000 루피아까지 비과세된다.</p> <p>(3) 제1항의 비과세소득의 크기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p>	<p>(1) 비과세소득의 크기는 최소 아래와 같다</p> <p>a. 본인공제 54,000,000 루피아</p> <p>b. 배우자공제 4,500,000 루피아</p> <p>c. 제8조 제1항의 남편소득과 합산하는 부인의 경우, 부인 본인 공제 54,000,000 루피아</p> <p>d.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4,500,000 루피아, 최대 3명</p> <p>(2a) <b>제4조 제2항 제e목의 중소기업 개인납세자는 연간 500,000,000 루피아까지 비과세된다.</b></p> <p>(3) 제1항과 <b>제2a항</b>의 비과세소득의 크기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p>

**제4장 부가가치세법** : ①부가가치세율 인상, ②③면세대상 축소 및 전략적 재화 지정(비과세 확대) → 비과세대상 일부 축소

① 부가가치세율 인상

구분	규정	기존	신규
※ (의미) 부가가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1%p 씩 인상			
부가세율 인상	부가 가치세법 제7조	(1)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한다.	(1)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a. 2022.4.1.부터 11% b. 2025.1.1.부터 12%
		(3) 제1항에 언급된 세율은 정부규정에 의해 최저 5%와 최고 15%로 변경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세율은 <del>정부규정에 의해</del> 최저 5%와 최고 15%로 변경될 수 있다.

②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축소 → 단, 필수사항은 전략적 재화로 설정하여 비과세 유지

구분	규정	기존	신규
※ (의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대폭 축소 ('종교'분야를 제외하고는 면세폐지 또는 지방세가 부과되는 재화·용역만 면세로 남겨둠) → 다만 필수사항은 전략적 재화로 지정하여 비과세를 유지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변경	부가 가치세법 제4A조	(2) 면세대상 재화는 다음과 같다. a. 직접 채굴된 광물. 단, 석탄 채굴 상품은 포함하지 않음. b. 생활필수품 c.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하는 식음료로서 현장에서 소비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케이터링 서비스도 포함됨) d. 현금, 금괴, 유가증권	(2) 면세대상 재화는 다음과 같다. a. 직접 채굴된 광물. 단, 석탄 채굴 상품은 포함하지 않음.(삭제) b. 생활필수품 (삭제) c. <u>지방세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u>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하는 식음료로서 현장에서 소비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케이터링 서비스도 포함됨). d. 현금, <u>국가의 외환보유 이익을 위한</u> 금괴, 유가증권

구분	규정	기존	신규
		<p>(3) 면세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다.</p> <p>a. 의료</p> <p>b. 사회복지</p> <p>c. 우편</p> <p>d. 금융</p> <p>e. 보험</p> <p>f. 종교</p> <p>g. 교육</p> <p>h. 문화 예술</p> <p>I. 광고 이외의 방송</p> <p>j. 육상 및 해상 대중교통. 국외항공용역에서 분리되지 않는 국내항공</p> <p>k. 인력 용역</p> <p>l. 호텔 용역</p> <p>m. 대중 정책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p> <p>n. 주차장 제공 용역</p> <p>o.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p> <p>p. 송금서비스</p> <p>q. 케이터링서비스</p>	<p>(3) 면세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다.</p> <p>a. 의료 (삭제)</p> <p><del>b. 사회복지 (삭제)</del></p> <p><del>c. 우편 (삭제)</del></p> <p><del>d. 금융 (삭제)</del></p> <p><del>e. 보험 (삭제)</del></p> <p>f. 종교</p> <p>g. 교육 (삭제)</p> <p>h. <u>지방세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예술가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문화 예술</u></p> <p><del>I. 광고 이외의 방송 (삭제)</del></p> <p><del>j. 육상 및 해상 대중교통. 국외항공용역에서 분리되지 않는 국내항공 (삭제)</del></p> <p>k. 인력 용역 (삭제)</p> <p>l. <u>지방세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호텔 용역으로서, 룸 렌탈을 포함한다</u></p> <p>m. 대중 정책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u>정부에 의해 수행될 수 밖에 없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u></p> <p>n. 주차장 제공 용역으로서, <u>주차장 주인에 의해 수행되는 주차공간 관리와 지방세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에 의한 주차공간 관리를 포함</u></p> <p>o.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삭제)</p> <p>p. 송금서비스 (삭제)</p> <p>q. 케이터링서비스로서, <u>지방세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식음료 제공활동을 포함</u></p>

③ 전략적 재화에 대한 과세 제외

구분	규정	기준	신규
전략적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적용 제외	부가 가치세법 제7조	<p>※ (의미) 제4A조, 비과세대상에서 삭제한 필수항목을 전략적재화로 지정하여 비과세 유지함</p>	<p>(1a) [신설] 다음은 납부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되지 않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과세적용되지 않음 (제1항에 언급된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제한 내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수출 및 다운스트림 산업을 장려</li> <li>b. 통상, 투자, 비준된 국제협약, 국제관례 등 외국과의 가능한 협정을 수용</li> <li>c. 국가백신프로그램을 위한 백신의 획득을 통해 공중보건의 증진을 장려</li> <li>d. 비교적 공공이 수용가능한 책, 일반교육, 경전, 종교서적 등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 교육과 국가역량을 제고</li> <li>e. 종교시설 건설을 장려</li> <li>f. 외국자본에 의한 지원으로 국가프로젝트의 시행을 담보</li> <li>g. 수입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특정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국제관례를 수용</li> <li>h. 자연재해 등을 다루고자하는 필요과세대상용역과 과세대상재화의 확보를 지원</li> <li>I. 항공 대중교통의 확보를 담보</li> <li>j. 국가발전을 위한 특정 전략 재화 및 용역을 지원 (다음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수에 의해 필요로하는 생활필수품</li> <li>2. 국가 보건보험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의료 용역</li> <li>3. 사회 용역</li> </ul> </li> </ul>

구분	규정	기존	신규
			4. 금융 5. 보험 6. 교육 7. 육상 및 해상 대중교통. 국외항공용역에서 분리되지 않는 국 내항공 8. 노동

④ 기타

구분	규정	기존	신규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 가치세법 제8A조	(2) 제1항에 언급된 기타 가액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령에 의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타 가액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령에 의한다. (삭제)
			(3) [신설] 과세가능 재화와 용역의 매입, 과세가능 재화의 수입, 과세 가능 무형재화의 이용, 관세구역 외로부터 관세구역 내로의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항에 언급된 기타 가액의 형태로 부가된 세액에 계산된다
매입세액	부가 가치세법 제9조	(8) 매입세액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못하다. c. 세단이나 왜건형 차량의 획득과 유지에 관한 비용. 다만 판매 및 임대용 상품은 제외한다	(8) 매입세액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못하다. c. <del>세단이나 왜건형 차량의 획득과 유지에 관한 비용. 다만 판매 및 임대용 상품은 제외한다</del> (삭제)

**제5장 조세사면(납세자 자발적 신고제도) (규정 신설) : 2016~2020 취득한 미신고 자산에 대해 12~18%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세무조사·기소 등 면제**

제5조

- (1)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관한 데이터 및/또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순 자산을 진술서신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언급된 순 자산은 자산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뺀 값으로서, 조세 사면에 관한 2016년 법률 번호 11에 언급된 사항이다.
- (3) 제1항에서 언급된 진술서신은 조세사면에 관한 2016년 법률 번호 11에 언급된 진술서신이다.
- (4) 제2항에서 언급된 자산은 납세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다.
- (5) 제1항에서 언급된 순자산은 추가소득으로 간주되고, 최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6) 제5항에서 언급된 최종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7) 제6항에 언급된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a. 인니 영토 내에 위치한 순자산의 6%(다음에 투자하는 경우)
    1.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 b. 인니 영토 내에 위치한 순자산의 8%(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1.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 c. 인니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순자산의 6%(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
    1. 인니 영토로 이전; 그리고
    2. 다음으로 투자:
      - a)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 b) 국채
  - d. 인니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순자산의 8%(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
    1. 인니 영토로 이전; 그리고
    2. 다음에 투자하지 않음:
      - a)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b) 국채

e. 인니 영토 외부에 있으며 인니 영토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순자산의 11%

(8) 제6항에 언급된 과세표준은 진술서신에 신고되지 않은 순자산액이다.

(9) 제8항에 언급된 순자산액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a.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명목 가치;

b.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가치가 과세 대상의 판매 가치이고, 동력 차량의 경우 동력 차량의 판매 가치이다.

c. 금과 은에 대해 PT Aneka Tambang Tbk.에서 발행한 가치;

d.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서 공시한 가치;

e. 국유 증권 및 채무 증권 및/또는 회사가 발행한 수쿠크에 대해서는, 지난 회계 연도 말의 자산 상태 및 상태에 따라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가 공시한 가치

(10) 제9항 b에서 e까지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경우, 재산의 가치는 감정평가 결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1) 납세자는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자산공시 알림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순자산을 공시한다.

(2) 자산공시 알림은 다음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a. 소득세 납부 최종 증명서

b. 보고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세한 자산 목록;

c. 부채 목록;

d. 제5조 제7항 c. d.에 언급된 납세자가 인니 영역 밖에 위치한 순자산을 인니 영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순자산을 인니 영역으로 이전한다는 진술서

e. 다음에 대해 순자산을 투자한다는 진술서:

1.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납세자가 제5조 제7항 a, c에 따른 순자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3)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산 공개 알림 제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4) 국세청장은 조사 결과 공시된 순자산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받은 납세자는 조세사면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1호 제18조 제3항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6)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무부, 기타 당사자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공개 알림 및 첨부 문서에서 추출된 데이터 및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죄 기소 등에 활

용될 수 없다.

(7) 순자산 공개 절차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다.

### 제7조

(1) 제6조 제2항 d에 따라 순자산을 인니 영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납세자는 늦어도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2) 순자산 투자를 선언한 납세자:

- a. 인니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 b. 제6조 제2항 e에 언급된 국채는 늦어도 2023년 9월 30일까지 순자산을 투자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순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4) 제1항, 제2항 및/또는 제3항의 규정이, 제5조 제7항 a, b, c, d에 언급된 순자산 투자 혹은 이전을 선언한 납세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순자산의 부분은 2022 회계연도의 최종 소득으로 처리되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국세청장이 과소납부된 세금 평가서를 발행하는 경우, 언급된 소득에는 다음 비율의 추가 최종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 4.5% : 제5조 제7항 a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2. 4.5% : 제5조 제7항 c.2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3. 7.5% : 제5조 제7항 c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4. 5.5% : 제5조 제7항 d.1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b.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을 공개하고 납부할 소득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언급된 소득에는 다음 비율의 추가 최종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 3% : 제5조 제7항 a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2. 3% : 제5조 제7항 c.2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3. 6% : 제5조 제7항 c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4. 4% : 제5조 제7항 d.1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5) 다음에 관한 추가 조항은 재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한다:

- a. 순자산을 인니 영토로 이전하는 절차;
- b. 인니 영토 내의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의 사업 활동에 대한 순자산 투자 그리고
- c. 투자에 사용되는 국채

## 제8조

(1) 개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순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

- a.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b. 2020년 12월 31일 현재 여전히 소유함; 그리고
- c. 2020 회계연도 개인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국세청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사항

(2) 제1항에서 언급된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의 순자산은 2020 회계연도에 해당 개인납세자가 추가로 받거나 번 소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순자산을 공개할 수 있는 개인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및/또는 2020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음
- b.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및/또는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예비 증거가 조사되지 않음.
- c. 조세 분야에서 범죄 행위로 인해 조사되지 않음;
- d. 현재 조세 부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님. 및/또는
- e. 현재 조세 부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있지 않음

## 제9조

(1) 제8조 제3항에 언급된 추가소득은 최종소득세 납부대상이다.

(2) 제1항에 언급된 최종소득세는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제2항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12% :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 위치한 순자산으로서 다음에 투자하는 경우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 b. 14% :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 위치한 순자산으로서 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 c. 12% :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순자산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로 이전; 그리고
  2. 투자:

- a)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 b) 국채
  - d. 14% :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순자산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로 이전; 그리고
    - 2. 다음에 투자하지 않음:
      - a)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 b) 국채
  - e. 18% :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순자산으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 (4) 제2항에 따른 과세기준은 2020회계연도 개인 연간 세무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순자산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 a.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형태의 자산에 대한 명목 가치; 또는
  - b.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이외의 자산에 대한 비용.

제10조

- (1) 개인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산공개 신고서를 통해 제8조 제1항에 언급된 순자산을 공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자산공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납세자 번호(NPWP)가 있어야 한다.
  - b.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최종 소득세를 납부한다.
  - c.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그리고
  - d. 납세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철회:
    - 1. 과납세금의 환급
    - 2. 행정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 3. 부정확한 세무조사서의 감면 또는 취소
    - 4. 부정확한 징수통지서의 감면 또는 취소
    - 5. 이의 제기
    - 6. 시정
    - 7. 항소

8. 소송 및/또는

9. 상고,

(3) 제1항에 따른 자산공시통지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소득세 납부 최종 증명서

b. 보고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순 자산의 세부 목록;

c. 부채 목록;

d. 제9조 제3항 c. d.에 언급된,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역 밖에 위치한 순자산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역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순자산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역으로 이전한다는 진술서;

e. 납세자가 제9조 제3항 a, c에 언급된 다음 사항에 투자할 의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진술서:

1. 인도네시아 영토 내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의 사업 활동 및/또는

2. 국채, 그리고

f.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제2항 d.에 언급된 신청을 철회하는 진술.

(4) 이 법 공포 후 자산공개통지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제출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및/또는 2020년도 연간 개인 소득신고의 정정신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개인납세자가 이 법 공포 시까지 2020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개인 납세자는 2020 회계 연도 이전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제출된 자산을 반영하는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a목의 서신에 언급된 자산 이외의 소유 순자산은 자산 공개 통지서에 공개해야 한다

(6)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의 자산 공개 통지 제출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공시된 순자산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증명서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8) 순자산의 공개 절차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재무부 규정에 규정된다.

## 제11조

(1) 제10조 제6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a. 제8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산 공개 공시에서 공시되지 않았거나 덜 공시된 자산에 대한 다른 데이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 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b. a목에서 언급된 납세 의무에는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및/또는 징수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원천징수 또는 징수되었지만 예치되지 않은 세금은 제외된다. 및/또는

- c. 재무부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기타 당사자가 관리하는 자산 및 첨부 사항의 공개 통지로부터 얻은 데이터 및 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및/또는 형사 기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 국세청장이 제1항 a목에 언급된, 공개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데이터 및/또는 기타 정보를 찾은 경우:
- a. 공개되지 않은 순자산 가치는 2022 회계연도의 최종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 b. a목에 언급된 소득은 국세청장의 과소납부 세금 평가 서신 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분된다:
    1. 30%의 세율로 최종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2. 국세기본법(일반 규정 및 조세 절차 및 그 개정에 관한 1983년 법률 번호 6)의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의 형태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 (1) 제10조 제3항 d.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개인 납세자는 해당 자산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이전해야 한다.
- (2) 제10조 3항 e.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에 대해 순자산 투자를 선언한 개인 납세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순자산을 투자해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 활동; 및/또는
  - b. 국채
- (3) 제2항에 따른 순자산에 대한 투자는 최소 5년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 (4) 제9조 제3항 a, b, c 또는 d에 언급된 순자산의 이전 및 투자를 선언한 납세자가 제1항, 제2항 및/또는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충족하지 않는 순자산 부분은 2022 회계연도의 최종 소득으로 처리되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a. 국세청장이 과소납부 세금평가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비율의 추가 최종 소득세가 적용된다.
    1. 4.5% : 제9조 제3항 a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2. 4.5% : 제9조 제3항 c.2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3. 8.5% : 제9조 제3항 c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4. 6.5% : 제9조 제3항 d.1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 b.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을 공개하고 납부할 소득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비율의 추가 최종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3% : 제9조 제3항 a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2. 3% : 제9조 제3항 c.2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3. 7% : 제9조 제3항 c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4. 5% : 제9조 제3항 d.1에 언급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

(5) 다음에 관한 추가 사항은 재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한다:

- a. 순자산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로 이전하는 절차;
- b.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 천연 자원 처리 부문 또는 재생 에너지 부문의 사업 활동에 대한 순자산 투자 그리고
- c. 투자에 사용되는 국채

**제6장 탄소세 (규정 신설) :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의 단위 킬로그램당 탄소 시장 가격(또는 30 IDR)을 부과**

- (1)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된다.
- (2) 제1항에 따른 탄소세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 a. 탄소세 로드맵; 및/또는
  - b. 탄소 시장 로드맵.
- (3) 제2항 a.에 언급된 탄소세 로드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탄소 배출 감소 전략;
  - b. 우선 부문 목표;
  - c.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의 연계; 및/또는
  - d. 다양한 다른 정책 간의 정렬.
- (4) 제3항의 탄소세 로드맵 정책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결정한다.
- (5) 탄소세 납부자는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 (6) 탄소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를 함유한 재화 또는 활동에 부과된다.
- (7) 탄소세가 부과될 때 다음사항이 결정된다.
  - a. 탄소 함유 상품 구매 시;
  - b. 일정량의 탄소 배출량을 생산하는 활동의 연말에; 또는
  - c. 정부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시간.
- (8)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의 단위 킬로그램당 탄소 시장 가격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 (9) 제8항에 언급된 탄소시장에서 탄소 가격이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 킬로그램당 30루피아 미만인 경우, 탄소세 비율은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킬로그램당 최소 30루피야로 설정됩니다.

- (10) 다음에 관한 조항:
  - a. 제8항에 따른 탄소세율의 결정
  - b. 제9항에 따른 탄소세율의 변경 및/또는
  - c. 세금 부과 기초는 하원과 협의한 후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 (11) 제1항에 언급된 탄소세 대상 과세 대상의 추가에 관한 규정은 예산결정을 위해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후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되거나 그에 따라 결정된다.
- (12) 탄소세 수입은 기후 변화 통제를 위해 할당될 수 있다.
- (13) 환경 부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 거래, 탄소 배출량 상쇄 및/또는 기타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다음이 주어질 수 있다.
  - a. 탄소세 감소; 및/또는
  - b. 탄소세 의무 이행을 위한 기타 처리.
- (14) 다음에 관한 조항:
  - a. 계산, 징수, 지불 또는 예치, 보고 절차 및 탄소세 부과 메커니즘 그리고
  - b. 제13항 a.에 언급된 탄소세 감소 절차 및/또는 제13항 b.에 언급된 탄소세 의무 이행을 위한 기타 처리는 재무장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 (15) 다음에 관한 조항:
  - a. 제5항에 따른 탄소세의 대상 및/또는
  - b. 제12항에 언급된 기후 변화 통제를 위한 탄소세 수입 할당은 정부가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해 하원에 제출한 후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되거나 정부 규정에 근거한다.
- (16) 탄소세와 관련된 권리 및 납세 의무 이행은 일반 조항 및 과세 절차 분야의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7장 소비세 :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구분	규정	기존(UU 11/1995)	신규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소비세법 제4조	<p>(1) 소비세는 다음으로 구성된 소비재에 부과됩니다.</p> <p>a.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사용된 재료 및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p> <p>b.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농축액을 포함하여 사용된 성분 및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 에틸알코올을 임의의 양으로 함유하는 음료;</p> <p>c. 담배, 시가, 잎담배, 얇게 썬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 제품을 포함하는 담배 제품(대체 또는 보조 재료가 제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p>	<p>(1) 소비세는 다음으로 구성된 소비재에 부과됩니다.</p> <p>a.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사용된 재료 및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p> <p>b.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농축액을 포함하여 사용된 성분 및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 에틸알코올을 임의의 양으로 함유하는 음료;</p> <p>c. 담배, 시가, 잎담배, 얇게 썬 담배, <b>전자 담배</b> 및 기타 담배 가공 제품을 포함하는 담배 제품(대체 또는 보조 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p>
소비세 위반 조사권 규정	소비세법 제40B조		<p>(1) 세관 및 소비세 공무원은 소비세 분야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p> <p>(2) 제1항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소비세 분야의 행정 위반인 경우 소비세 분야의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적으로 해결된다</p> <p>(3)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a.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8조에 언급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p> <p>b. 관련자는 지불해야 하는 소비세 가치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의 형태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p> <p>(4) 제3항에 따라 조사되지 않은 위반 혐의와 관련된 소비세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결정한다</p> <p>(5) 그 밖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받지 아니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p> <p>(6) 제3항에 따라 조사되지 않은 위반 혐의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p>

구분	규정	기존(UU 11/1995)	신규
<p style="text-align: center;">장관의 요청에 따른 소비세 수사 중단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세법 제64조</p>	<p>(1) 국세 수입을 위해,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장관은 소비세 부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p> <p>(2) 제1항에 언급된 소비세 분야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의 종료는 해당자가 미납/과소납 소비세와 해당액의 4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을 지불한 후에만 종료된다</p>	<p>(1) 국세 수입을 위해,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장관은 요청 서신일로부터 <b>6개월 이내</b>에 소비세 부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p> <p>(2)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는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자가 미납/과소납 소비세와 해당액의 4배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을 지불한 후에만 종료된다</p> <p>(3) 형사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p> <p>(4) 제3항에 따른 지급은 징역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기소로 간주될 수 있다.</p> <p>(5)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납부한 금액이 재판시점에 이르기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은 피고인에 부과된 형사벌금의 납부로 계산될 수 있다</p> <p>(6) 제1항에 따른 소비세 분야의 범죄수사종료와 관련된 소비재는 국유재산으로 한다</p> <p>(7)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소비세 분야 범죄수사 종료와 관련된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p> <p>(8) 장관과 법무장관은 (1)항에 언급된 소비세 분야의 범죄 행위 조사 요청 및 종료와 관련하여 지명된 공무원에게 추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9) 제1항에 언급된 조사 종료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p>

## 제8장 경과규정 : 신법에 의한 과거 조세사면법안 적용의 일시정지

### 제15조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본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는, 순자산 공개와 관련된 '조세사면에 관한 2016년 11호 법률'의 모든 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9장 클로징 : 소득세법 2022 회계연도 시행, 부가세법 및 탄소세 2022.4.1. 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17조

- (1) 제3조의 규정(소득세법)은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2) 제4조의 규정(부가세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13조에 언급된 규정(탄소세) 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석탄 화력 발전소 분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처음으로 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sub>2</sub>e) 또는 등가 단위 당 30 루피아가 부과된다.

### 제19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중의 인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 법의 공포를 명령한다.